

의안번호	제 28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허창원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허창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발 의 자 : 허창원, 전원표, 송미애,
연철흙, 이옥규, 정상교,
김영주

1. 개정이유

-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

2. 주요내용

- 정기회 개최일정 및 방법 조정(안 제10조)
 - 정기회 회의 일정 : 매년 6월, 12월 → 연 2회
 - 방법 : 후단 신설(긴급·경미 안건은 서면 의결)
- 유효기간 연장(부칙 제2조)
 - 2019년 12월 31일 → 2024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관계없음.
- 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매년 6월과 12월 중에”를 “연 2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
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회의) ① (생략)</p> <p>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6월과 12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</p> <p>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기금의 유효기간) ①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② 이 조례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회계의 채권·채무 등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가 승계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